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의 요약

- 보험차익은 세무상 익금산입되는데, 이를 지급받아 지급받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멸실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자산을 개량하는 경우 취득개량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혹은 다음 다음 사업연도(2년) 종료일까지 사용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차익 해당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손금산입을 위해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해당 제외) 계상하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위해 충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 가능함(기업회계상 보험차익은 특별이익계상).
-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및 해산시 당해 사유발생연도에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일시 익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상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익금산입됨.



●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보험차익 취득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본 조의 개요

1) 보험차익 손금산입의 개요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보험금은 당해 사고가 발생한 자산이나 제반 재산의 원상복구해당액이 일반적이다.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의 멸실 및 손괴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자금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요된 보험차익금 해당액 전액을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에 상각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보험금의 수취와 보험차익의 익금산입에 따른 과세부담을 경감시킨다.

보험차익이 손금산입되기 위하여는 멸실 및 손괴된 자산이 고정자산이어야 하고,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예외로서 보험금 수취사업연도에 취득이나 개량이 불가능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2개의 사업연도 이내까지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바로 그 사업연도 익금에 일시산입한다. 참고로 보험차익,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비교 요약은 본 법 제36조 부분에 해설하였다.

2) 보험차익 일시손금산입의 이유

① 과세이연 및 세액부담 경감목적

보험차익은 법인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금액의 초과지급에 따른

차익인데, 이는 기업의 시설 재구축 생산활동 재개를 위한 기초금액이다.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는데 일시에 과세하면 보험금의 상당부분이 법인세 부담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며, 해당 법인세 부담액만큼 사업규모를 줄이는 뜻이 된다.

따라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기업 실체의 현상유지라는 차원뿐 아니라 일종의 자본거래성격의 측면을 고려하여 본 조는 보험차익으로 멸실된 고정자산의 대체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일시상각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차익을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과세의 완전배제가 아니라 시간적 이연에 불과한 것이다.

② 장기적 관점에서 고정자산 현상유지

특히 인플레이션상태에서 사고로 고정자산이 소실되면 보험금금액이 장부상 소실되는 고정자산가액보다 훨씬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산시설을 재건축하거나 동등수준 이상의 고정자산을 원상복구하는데 보험금 수취액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험차익이 있다해서 과세하면 고정자산의 현상유지도 못할 정도가 되므로 생산활동과 수익에 차질이 있다. 따라서 손금산입을 통해 장기적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2. 보험차익의 의의와 외계·세무처리

1) 보험차익의 개념

① 기업회계상 특별이익처리

보험차익이란 화재 등의 사고 및 재해로 인해 소실된 자산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상 수령한 보험금이 당해 자산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제51조는 보험차익을 비경상적·비반복적 발생사항으로 보아 무조건 특별이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당연도 익금사항으로 자동반영된다는 뜻이다.

② 법인세법상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처리

법인세법은 보험차익에 대해 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특별히 익금불산입으로 예외규정하지 않았다. 즉, 보험차익은 일반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대신 손금산입을 통해 보험차익의 일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과세부담을 이연시키고 있다. 즉,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정규적·일반적 감가상각비는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과 계속 상계해 나감으로써 서서히 과세되는바, 과세부담의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2) 보험차익의 계산

① 보험금과 순장부가액과의 차이

보험계약시 특정사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받음을 계약한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자산금액은 과거 기간동안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큰 보험금을 받는데 이때 보험차익이 발생되는 것이다.

② 보험차익 계산사례

다음의 예를 든다.

【사 례】

○ 건물순장부가액 50,000,000원, 손해 및 멸실액 30,000,000원, 보험금액 30,000,000원, 건물전체의 객관적 평가액 60,000,000원이라면,

○ 멸실된 자산의 순장부가액 상당액

$$= \text{총장부가액} \times \frac{\text{멸실가액}}{\text{총시가}} = 50,000,000 \times \frac{30,000,000}{60,000,000} = 25,000,000 \text{원}$$

⇒ 보험차익 = 보험금 - 멸실자산의 순장부가액이므로 30,000,000 - 25,000,000 = 5,000,000원이 된다.

즉, 5,000,000원만큼은 순자산의 증가로 익금산입되지만 당해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면 전액이 손금산입되어 보험금 수취로 인한 특별이익 계상액에 대하여 당연도의 추가적 과세부담액은 없고 향후로 세금부담이 이연된다.

II. 보험차익 취득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방법

(법 제38조제1항)

1. 보험차익 취득자산의 손금산입액 계산

1) 보험금의 범위

①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보험금이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기타 보험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보험금만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본 조의 보험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2) 멸실·손괴된 고정자산

① 기업회계상의 고정자산

본 조 제1항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회계 개념상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만에 한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다. 반대로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이나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유재고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험차익은 재고자산 매출수익의 일종이 되므로 이는 정상적 영업활동의 수익창출과정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3) 대체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

(1)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

① 자산분류상의 동일 계통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라고 본 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자산과 같은 생산영업 활동자산을 대체할 때 조세혜택지원의 뜻이 있다. 여기서 동일 종류란 당해 고정자산의 용도나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멸실된 자산간의 동일부분요건

상기 시행령 끝부분은 멸실자산과 동일한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사물은 없지만 용도나 목적에서의 실질적 동일성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건물과 기계장치가 함께 멸실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하였다면, 기계장치부문에 대한 보험차익은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아 손금산입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이익 해당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된대로 놔둔다. 즉, 실질적 이용의 동일성을 구분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자산의 용도분류가 다른 것간에는 함께 부수되는 것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모 등의 차이는 문제없다. 예를 들어 대형선박 1대분의 보험금으로 소형선박 2대를 취득한 경우나, 새우트롤러선 멸실로 인한 보험금으로 명태트롤러선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들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본다.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자산의 사용 및 구입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취득하여도 당연히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2) 손괴된 고정자산 개량

사고가 발생한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의 다른 대체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이나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서 개량이란 자본적 지출(고정자산의 가용내용연수 향상 등)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2. 보험차익의 손금산입방법

1)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익금산입할 보험차익 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고정자산의 취득액 혹은 개량액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만을 말한다. 취득·개량 고정자산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면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미달시는 대응손금산입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보험차익의 손금산입과 일시상각충당금

①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혹은 세무조정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인한 보험차익을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지출하면 당해 소요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는바, 결산조정방식이 원칙이지만 본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의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신고조정방식으로도 손금산입한다.

② 결산상 전액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한 금액이거나 개량한 금액 해당 보험차익만 손금산입하는데 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이는 향후의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한 감가상각충당금과 상계처리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③ 제6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일시 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분할상계와 계상

보험차익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년의 일반감가상각비를 이미 계상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 나간다. 이로써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첫사업연도부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향후 이연납부·분할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④ 보험차익 취득부분만의 상계

일반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매년 상계범위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부분만에 한정한다.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정규 감가상각비]

$$= \frac{\text{당해 고정자산의 당기감가상각비 총액}}{\text{당해 고정자산의 총취득가액}} \times \frac{\text{당해 자산취득으로 손금에 산입된 보험차익금액}}{\text{당해 고정자산의 총취득가액}}$$

3) 손금산입안도액 계산

① 보험차익 전액

수취한 보험금 중 대체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의 10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험금의 일부만 대체자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는 보험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는 받은 보험금 중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순장부가액 상당부분, 즉 보험차익이 아닌 부분금액이 먼저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험차익 상당액

중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즉, 보험차익은 기존 장부잔액의 맨 나중 금액에 대해 발생되고 손금산입한다. 이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보험차익 손금산입한도액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금액 - 멸실자산의 기존 순장부가액(즉, 보험차익이 아닌 최초 금액)

예를 들어 보험금 3천만원, 기존자산 장부잔액 1천만원, 취득·개량고정자산 2천만원인 경우, 보험차익은 2천만원인데 취득고정자산 2천만원에 대해 이 중 1천만원은 보험차익이 없는 기존 장부가액이다. 즉, 취득자산 2천만원에 대해 보험금 3천만원 중 보험차익이 아닌 1천만원 금액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1천만원(=2천만원-1천만원)이 보험차익 재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머지 1천만원만이 손금산입할 보험차익이다. 즉, 2천만원의 보험차익 중 1천만원만 손금산입한다.

② 일부 미사용시의 안분배제

만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다면 사용부분에 비례하는 보험차익상당액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본 조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고정자산의 보험금수취평가의 부분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고정자산의 재취득을 용이하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보험차익의 손금산입한도액

=총보험차익×취득 또는 개량에 실제 사용한 금액총 보험금 수취액

【사 례】

○ 장부잔액 500,000원의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이 1,000,000이고, 대체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금액이 800,000원이라면,

⇨ 보험차익계산액 = 1,000,000 - 500,000 = 500,000

⇨ 보험차익 중 손금산입한도계산액

= 500,000 × $\frac{800,000}{1,000,000}$ = 400,000원이 된다.

즉, 보험차익 500,000원 중 100,000원은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이므로 익금에만 산입되고 400,000원은 개량·취득에 지출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익금산입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부담을 이연시킨다.

3.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시기

1) 당기 수취·당기 지출시 당기손금

① 보험금지급 확정시 손금산입

본 조 제1항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시에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차익의 익금산입시기는 본 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개념에 의거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따라서 보험금지급여부는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졌더라도 본 법 제40조에 의거 보험금지급 등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는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보험금 실제 수령은 하지 않아 당해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없게 되어 과세부담을 이연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시기와 보험금의 익금산입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요구되는데, 보험금을 받은 날을 보험금의 지급금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년 내 사용조건이 있어 어느 정도 시점차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② 2년내 취득조건하에 손금산입

보험금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우선 자기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지급확정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손피고정자산을 개량하지 못하면 본 조 제2항에 의해 차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개량하는 조건하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이밖에 만약 보험금을 수취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발신고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보험차익이라면 그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도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손금산입시기는 임의선택사항이 아니다. 보험차익 당해 연도에만 대응시켜야 하며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

2) 2년내 취득·개량 지출 사용조건아에 당기손금산입

(1) 취득·개량 지출의 기안연장 (법 제38조제2항)

① 2년내까지 취득 및 개량 가능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취득, 개량함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과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바로 그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먼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년 후의 대체취득, 개량까지에 대해서도 시간여유를 주고 있다. 물론 2년내 대체취득·개량되지 않거나 폐업·해산하면 그 사유 발생연도에 익금환입한다. 과거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사유가 있는 때에 단순 익금산입한다.

② 장기할부 건설·제조지급도 보험차익의 사용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대체자산을 장기할부조건부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해 보험금 혹은 보험차익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대체자산취득에 사용될 것이니 손금산입한다는 것이다.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인 경우 보험차익이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차익 사용기간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되고 장기건설인 경우는 보험차익 사용기일까지 아직 건설이 진행중이라도 보험차익이 지출되기만 하였으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2)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법 제38조제3항)

① 보험금 취득·개량 고정자산명세서 제출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개량자산 관련 사용액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지급받은 보험금명세서, 받은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2년 이내 취득·개량 지출시 사용계획서 제출

당연도 즉시 사용이 아니라 2년내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으로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혹은 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④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보험차익 손금산입액의 분할익금산입 및 일시익금산입 (법 제38조제4항)

① 손금산입 ⊖유보후 향후 ⊕유보 분할익금산입

보험차익 자체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당연한 과세원리이다. 기업회계기준도 보험차익은 특별이익으로 당기이익으로 반영하고 있어 보험차익은 구태여 익금산입조정할 필요가 없다. 보험차익을 기업회계상 당해 자산의 차감순액 항목으로 처리하더라도 익금산입하는데 이는 당연익금이므로 기타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에 대응하여 보험차익의 멸실된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 사용금액에의 당기손금산입액은 ⊖유보 사항으로 나중에 ⊕유보로 익금산입될 금액이다. 보험차익의 대응손금산입은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자산은 서서히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므로 이 금액과 당기분 분할 상쇄해 나가면서 익금산입된다. 중도 처분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가 반영되어 계산된 처분 이익에 ⊕유보액이 익금으로 가산되어 과세되는 형태가 된다.

② 감가상각자산은 매년도 감가상각비와 상계됨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감액계상하는데, 매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방법(즉, 일시상각충당금과 일반상각누계액과 상계처리, 상쇄해 나가는 개념)으로 매년 서서히 익금산입해 나간다. 이로써 취득자산의 일반상각누계액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서로 상쇄되면서 이중의 손금산입을 상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③ 2년 이내 미사용 및 해산

보험차익 지연사용 허용기간인 보험금 수취후 다음 사업연도 2년 기간내에 보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바로 그 사유발생연도에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환입하여 일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만 계상한 경우는 조정계산서에 ⊖유보된 금액을 ⊕유보로 하여 일시 익금산입한다.

④ 합병시 제외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을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합병거래에서의 불이익은 없다.